

구 매 요 구 서

KF-16 성능개량 항공기 헬멧장착시현장치 개선

1. 적용 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공군 KF-16 성능개량 항공기에 헬멧장착시현장치(HMD) 운용능력을 갖추어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에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아래 항목 또는 국제표준 및 규격 적용 가능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A ISO/IEC GUIDE 41	포장-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사항
KS T 1002	수송 포장계열 치수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61	외부포장용 골판지 상자

2.3 규정 및 지침

방위사업 관리규정(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9조(방위사업청)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규정(국방기술품질원)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방위사업청)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방위사업청)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업무규정(국방기술품질원)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또한, 구매요구서의 내용은 한글과 영문 중 한글을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각 품목의 명칭은 특정 제조사 및 모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구성품은 표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과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을 가진 품목이어야 한다.

3.1 제원

3.1.1 헬멧장착시현장치(HMD)와 관련하여 KF-16 성능개량 항공기에 기장착된 기반체계 구성품은 표 1과 같다.

표 1 KF-16 성능개량 항공기(KF-16U) HMD 관련 기반체계 구성품

구성품 명칭	기능
Aircraft Interface Unit(ACIU)	- KF-16U 항공기와 HMD 사이의 인터페이스 통신 및 제어 담당 - HMD 구성품에 전원 공급, 데이터 로드 지원 및 시스템 시작
Tracker Reference Unit(TRU)	- 조종석에 설치된 광학 추적장치로 주간·야간정보시현장치 지원 - 광학 센서를 이용하여 조종사의 머리 위치와 방향을 측정하여 ACIU로 데이터 전달
Helmet-Vehicle Interface	KF-16U 항공기와 HMD를 연결하여 전원(12.5 VDC) 공급과 통신을 가능하게 함
KF-16U 인터페이스	KF-16 성능개량 항공기에 적용된 인터페이스로 그림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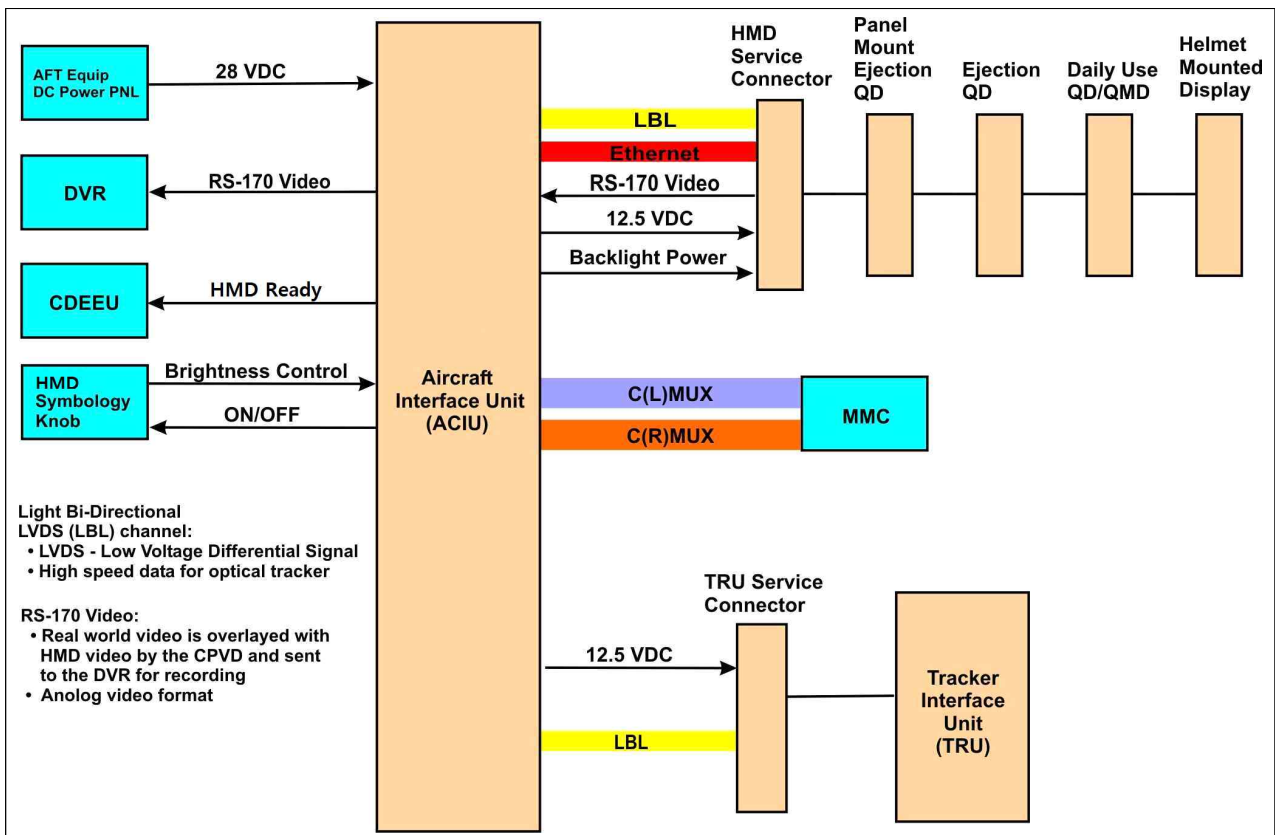


그림 1 HMD Functional Block Diagram

3.1.2 장비의 주요 제원은 표 2에 따른다.

표 2 헬멧장착시현장치(HMD) 제원

* HMD: Helmet Mounted Display

구분	제원	
형태	전투기 조종사 헬멧	
적용 기종	KF-16 성능개량 항공기(KF-16U)	
공대공 교전 시 표적처리	가시거리 내(WVR)	HMD를 활용하여 획득한 표적은 항공기 센서와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High off-bore sight 능력을 갖춘 공대공 무장(AIM-9X 등)운용이 가능해야 함
	가시거리 밖(BVR)	항공기 센서가 획득한 표적 정보를 조종사 시야에 시현
공대지 임무 시 표적처리	표적 정보 불특정 임무	지상 임무 요원 및 타 항공기에서 전송한 정보를 HMD에서 이용 가능 (표적 좌표 최신화, 정밀 교전 가능)
	표적 정보 육안 식별 시	시현 표적 심볼과 실제 표적 위치 오차 발생 시 HMD를 통한 표적 정보 최신화 후 무장운용 가능
영상정보 처리	비행 중	임무 컴퓨터에 저장된 경로나 관심 표적을 HMD를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비행 후 (디브리핑 활용 목적)	헬멧 장착 카메라를 통한 조종사 시선 및 비행 정보 영상을 녹화 가능 (Video Format : RS 170 Composite Video, FOV : 19° 또는 동등 이상)
Image Source 해상도		VGA(800 pixel × 600 pixel) 또는 SXGA(1,280 pixel × 1,024 pixel)
Active Area(시현 범위)		주/야간 시 600 pixel × 600 pixel 또는 동등 이상
Refresh Rate(주사율)		60Hz ~ 100Hz
FOV(Field-of-View)		19° 또는 동등 이상
시현 정보		비행 제원, 센서, 무장 및 위협정보, Link-16 운용 비행 편조 위치정보

3.2 요구성능

표 3 헬멧장착시현장치(HMD) 개선사업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HMD 구성품	헬멧 조립체
	주간 정보 시현 장치
	Visor
	야간 정보 시현 장치
	Step-In Visor
	케이블 고정 장치
	개인 맞춤 라이너
	Zeta Liner
군수지원 장비	HMD 관련 항공기 점검 장비
	HMD 부대급 점검 장비
	조종사 맞춤 장비
부대급 정비·훈련	O'Level Maintenance Training, Personal Fitting Product Training
	Pilot HMD Familiarization

3.2.1 HMD 구성품

HMD 구성품은 성능개량이 완료된 공군 KF-16 항공기(KF-16U)에 연결 시 기장착된 기반체계를 통하여 본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며, 요구되는 HMD는 총 42대이다.

3.2.1.1 헬멧 조립체

3.2.1.1.1 헬멧 조립체는 HMD 구성품과 Oxygen Mask Assembly(MBU-20/P)를 장착/운용이 가능한 Gentex HGU-55/P 기반 KF-16 성능개량 항공기(KF-16U) 조종사 헬멧으로 비행 및 비상 사출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3.2.1.1.2 헬멧 조립체는 사용자(조종사) 맞춤을 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사이즈(Medium, Large, X-Large)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시 흔들림으로 인한 시현 정보 식별 불가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맞춤 라이너(필요시)와 Zeta Liner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3.2.1.2 주간 정보 시현 장치

3.2.1.2.1 주간 정보 시현 장치는 주간비행 시 조종사 시야에 비행 제원, 센서, 무장 및 위협정보, Link-16 운용 비행 편조 위치정보 등을 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3.2.1.2.2 주간 정보 시현 장치는 600 pixel × 600 pixel 이상 정보 시현으로 시야 중앙 기준 원형 19° 이상의 FOV(Field-of-View) 성능을 보유하며, 시현 정보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2.1.3 Visor

3.2.1.3.1 Visor는 주간비행 시 HMD 구성품에 장착되어 운영되며, 조종사 눈부심 방지, 사출 및 비상상황에서 조종사 안면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2.1.3.2 Visor는 HMD 구성품에 교체 장착할 수 있어야 하며, 임무에 따라 Tinted 및 Clear 두 가지의 색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2.1.4 야간 정보 시현 장치

3.2.1.4.1 야간 정보 시현 장치는 야간비행 시 조종사 시야에 비행 제원, 센서, 무장 및 위협정보, Link-16 운용 비행 편조 위치정보 등을 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3.2.1.4.2 야간 정보 시현 장치는 600 pixel × 600 pixel 이상 정보 시현으로 시야 중앙 기준 원형 19° 이상의 FOV(Field-of-View) 성능을 보유하며, Standard ANVIS 9 NVG(필요시 개조된)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3.2.1.5 Step-In Visor

3.2.1.5.1 Step-In Visor는 야간비행을 위해 야간 정보 시현 장치를 헬멧 조립체에 장착한 경우 사용하는 Visor의 종류로 다른 구성품과 간섭이 생기지 않게 헬멧 조립체에 장착/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3.2.1.5.2 Step-In Visor의 사이즈는 두 개 이상의 선택이 가능하며, 사출 및 비상상황에서 조종사 안면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2.1.6 케이블 고정 장치

3.2.1.6.1 케이블 고정 장치는 주간/야간 정보 시현 장치와 KF-16 성능개량 항공기(KF-16U) 간 통신을 위한 케이블을 Torso Harness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3.2.1.6.2 케이블 고정 장치는 PCU-15 Torso harness에 장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출 시 안전을 위해 Torso Harness와 주간/야간 정보 시현 장치 케이블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3.2.1.7 개인 맞춤 라이너

3.2.1.7.1 필요시 개인 맞춤 라이너를 헬멧 조립체 내부에 장착하여 충격으로부터 조종사 머리 보호, 중력가속도로 인한 Helmet 흔들림 방지, 시현 정보가 조종사 시야에서 벗어남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2.1.7.2 개인 맞춤 라이너의 제작이 필요한 경우 한국공군에서 조종사 두상을 스캐닝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하며, 조종사 두상 스캐닝을 위한 방법과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3.2.1.8 Zeta Liner

3.2.1.8.1 Zeta Liner는 헬멧 조립체 내부에 부착되어 조종사에게 편안한 착용감과 흔들림 방지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HMD 운용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3.2.1.8.2 Zeta Liner는 Helmet 크기, Zeta Liner 두께/길이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가 제공되어야 한다.

3.2.2 군수지원 장비

3.2.2.1 HMD 관련 항공기 점검 장비

3.2.2.1.1 HMD 관련 항공기 점검 장비는 HMD 운용에 따른 항공기 HUD(Head-Up Display)와의 일치 및 항공기 좌석 내에서 HMD 정보 시현 이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장비이다.

3.2.2.1.2 HMD 관련 항공기 점검 장비는 항공기 점검 필요 장비와 방법으로 세부목록은 운용 HMD에 따라 결정한다.

3.2.2.1.3 운용 HMD 결정에 따른 해당 장비 필요시 항공기 HUD와의 일치 점검 장비는 4대, 항공기 좌석 내 HMD 정보 시현 점검 장비는 8대가 요구된다.

3.2.2.2 HMD 부대급 점검 장비

3.2.2.2.1 HMD 부대급 점검 장비는 HMD 구성품 점검 기능 및 필요시 HMD 구성품의 개조를 위한 능력을 제공하는 장비이다.

3.2.2.2.2 HMD 부대급 점검 장비는 HMD 구성품 점검을 위한 정보를 시현하고,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체점검과 HMD 조정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2.2.2.3 HMD 부대급 점검 장비는 HMD 구성품 점검 필요 장비와 방법으로 세부목록은 운용 HMD에 따라 결정한다.

3.2.2.2.4 운용 HMD 결정에 따른 해당 장비 필요시 HMD 구성품 점검 장비는 8대, HMD 구성품 개조 장비는 4대가 요구된다.

3.2.2.3 조종사 맞춤 장비

3.2.2.3.1 개인 맞춤 라이너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조종사 두상을 스캐닝하여 개인 맞춤 라이너를 제작할 수 있는 측정 장비와 Fitting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3.2.2.3.2 개인 맞춤 라이너는 측정 장비와 Fitting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3.2.2.3.3 개인 맞춤 라이너 필요시 조종사 두상을 스캐닝할 수 있는 측정 장비 1대와 Fitting 프로그램이 포함된 Laptop 1대가 요구된다.

3.2.3 부대급 정비·훈련

해당 내용은 3.3 통합체계지원요소 중 3.3.1 기술 요원 교육 및 사용자(조종사) 친숙화 훈련에 따른다.

3.3 통합체계지원요소

3.3.1 기술 요원 교육 및 사용자(조종사) 친숙화 훈련

3.3.1.1 기술 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은 사용자(조종사) 교육과 상호 연계하여 시행하며, 설정된 기술 수준에 도달되도록 교육계획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3.3.1.2 교육은 업체 주관으로 초도 납품 이전에 수행하며, 교육을 위해 필요한 HMD 구성품과 군수 지원 장비는 소요군과 협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3.3.1.3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용, 정비, 보급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시행하며, 세부 교육계획은 소요군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교육 장소는 국내(대한민국)로 한다.

3.3.2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3.3.2.1 기술교범의 종류 및 수량은 표 4에 따르고, 추가하거나 제외할 때는 소요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 4 기술교범 종류 및 수량

구 분	품 명	수 량	비 고
1	사용자 운영 및 정비교범 또는 매뉴얼(책자형)	42부	장비당 1부
2	사용자 운영 및 정비교범 또는 매뉴얼 전자파일(CD)	42개	장비당 1개
3	부대 정비교범 또는 매뉴얼(책자형)	10부	운영기지당 2부(개) 무기체계과 2부(개) 기술정보과 2부(개)
4	부대 정비교범 또는 매뉴얼 전자파일(CD)	10개	
5	야전 정비교범 또는 매뉴얼(책자형)	10부	
6	야전 정비교범 또는 매뉴얼 전자파일(CD)	10개	

3.3.2.2 기술교범은 책자형과 전자식 기술교범(PDF 형식)으로 장비와 동시에 납품되어야 한다.

3.3.2.3 기술교범 변경 및 보충판은 장비 도태 시까지 후속 지원이 보장되어야 하고, 책자형과 전자식 기술교범이 혼용될 때는 변경/보충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3.3.2.4 납품 장비의 구성현황, 사용법, 주의사항(안전지침) 등이 포함된 취급설명서가 기술교범에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교정절차 및 특수검사절차에 대한 기술교범이 제공되어야 한다.

3.3.2.5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요청 시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목록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 전에 목록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목록화 대상 선정 및 목록화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외 제작사일 경우 표준화업무규정 제57조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직접 목록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3.3.2.6 계약당사자는 필요시 감항인증과 입증시험(수락시험)을 위한 기술자료 및 인증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기관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

- 4.1 계약상대자는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품질보증기관에 품질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소요군의 검사(또는 수락시험)를 거쳐 납품한다.
- 4.2 납품 및 설치 일정은 소요군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전체 사업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4.3 계약상대자는 구매품에 대해서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 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요군 및 사업관리기관과 협의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 4.4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시 문제점이나 의문점 발생 시 소요군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4.5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장비 운용부대를 방문하여 설치 예정 장소/장비 운용환경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소요군과 협의할 수 있다.
- 4.6 납지는 서산, 충주 및 군산비행장으로 하며, 소요군의 요청 시 변경될 수 있다.
- 4.7 모든 계약품목은 계약 후 15개월 이내에 초도품이 납품되어야 하고, 계약 후 21개월 이내에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단, 입증시험 필요시 초도품 1셋(지상장비 포함)은 초도납품 이전에 입증시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납품되어야 한다.
- 4.8 계약상대자는 Incoterms 2020의 DAP 조건으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5.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5.1 검사의 책임

- 5.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제조)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5.1.2 부품단종 등 계약 물품의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규격과 성능, 품질이 입증되는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5.1.3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5.1.4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소요되는 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군 장비 및 자재와 인력 등을 지원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2 검사 및 시험

- 5.2.1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 5.2.2 입증시험 및 수락시험
 - 5.2.2.1 입증시험은 초도납품용 제품을 활용하여 납품 시작 이전에 수행한다.
 - 5.2.2.2 입증시험은 구성품 또는 조립체(완제품) 단위에서 기능·성능 등을 검증하는 기술시험과 성능이 개선된 구성품 등을 무기체계에 장착하여 무기체계 상태에서의 기능·성능 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적합성 시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사업관리기관의 업무규정에 따른다.
 - 5.2.2.3 계약상대자는 시험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입증시험계획(안)을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사업관리기관은 관련 기관의 검토 과정을 거쳐 입증시험계획을 확정한다. 입증시험계획은 기술시험 계획과 체계 적합성 시험 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5.2.2.4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기술시험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소요군 및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소요군은 체계 적합성 시험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한다.

- 5.2.2.5 사업 관련 기관은 기술시험 간 참관 또는 입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체계 적합성 시험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지원하고, 세부 일정은 소요군과 협의한다.
- 5.2.2.6 본 사업 대상품목이 국외에서 시험평가 등을 수행하여 요구성능을 충족한 경우 입증시험을 생략하고 소요군의 수락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5.2.2.7 수락시험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시험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수락시험계획(안)을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사업관리기관은 관련 기관의 검토 과정을 거쳐 수락시험계획을 확정한다.
- 5.2.2.8 계약상대자는 국방기술품질원 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업무규정에 따른 감항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5.3 품질보증

- 5.3.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 5.3.2 품질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5.3.3 품질보증등급은 G(설치/통합시험보증형태)로 한다. G 등급은 계약업체의 장비 인도 후 수락 시험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인수하는 형태이며, 제작자증명서, 제작자검사증명서(또는 공장 수락검사증명서), 최종수락시험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 5.3.4 보증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할 경우 공급자는 계약 내용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5.3.5 계약상대자는 국제품질보증 협정에 따라 사업관리기관 또는 소요군이 계약상대자 국가의 정부품질관리 활동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 5.3.6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이 경과 후 장비 수명 동안 장비 운용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포장 및 표시

- 6.1 제품 포장은 KS A ISO/IEC GUIDE 41(포장에 대한 권고사항)에 따르거나, 포장에 관한 국제기준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 6.2 단위 포장, 내부포장, 외부포장은 시중 상용포장에 따른다.
- 6.3 국외에서 운송되는 물품은 수송 및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충격, 접촉에 의한 장비의 부식과 손상방지가 가능토록 견고한 수출용 포장이어야 한다.
- 6.4 계약상대자는 포장 상자 외부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 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월·일, 제작사 이름,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 제원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 6.5 포장 및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보안 및 안전

- 7.1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이 비록 일반사항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전파 및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 7.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부대를 출입할 요원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필하여야 한다.
- 7.3 계약상대자는 고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 사항이 누설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7.4 현장 조사 및 장비 설치 간 부대 출입에 따른 행정 사항 및 통제는 현지 부대의 조건에 따르며, 작전상황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7.5 입증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 기관이 요구 시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 8.1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출되는 모든 문서(교범류 제외)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야 한다.
- 8.2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주기적인 사업관리 회의 및 필요시 현안검토회의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 8.3 감독 및 검사 시 소요군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개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사업관리기관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8.4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 사항, 모호한 사항 등은 사업관리 기관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 해결한다.
- 8.5 계약상대자는 관리기관 또는 소요군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한다.
- 8.6 입증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본 사업에 대한 공정계획을 감독관 및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8.7 계약이행 간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발명 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